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합리적 활용방안

Using Unused Money of Prepaid Transportation Card



조웅래



홍명기

I. 서론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라 환승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교통카드 이용이 필수적이다. 2007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시행 전에 74% 수준에 머물던 경기도 교통카드 이용률은 2011년에 98.9%로 증가하였다. 수도권에서 이용되는 교통카드는 신용카드와 결합된 후불형 교통카드 그리고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 eB카드의 캐시비와 같은 선불형 카드가 있다.

선불형 교통카드의 경우 일정 금액을 충전한 후 사용이 가능한데, 카드의 분실, 훼손, 소액 잔액, 후불신용카드로의 변경 등으로 인해 이용되지 않는 교통카드가 발생한다. 이러한 선불형 교통카드 중 3-5년 정도 이용실적이 없는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의 충전선수금은 이용도 되지 못하고 계속 쌓이게 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에 따르면 선불형 교

통카드를 발행한 카드사는 이용자가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경우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해야 하며, 환급에 관한 약정은 약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법령에는 선불형 교통카드의 잔액 환급에 대한 소멸시효는 규정된 바가 없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환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없기 때문에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의 처리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II.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현황

1. 교통카드 이용현황

선불형 교통카드는 일정금액의 돈을 미리 충전

조웅래 : 경기개발연구원 교통연구실, raycho@gri.kr, Phone: 031-250-3251, Fax: 031-250-3116

홍명기 : 경기개발연구원 교통연구실, myoungki63@gri.kr, Phone: 031-250-3170, Fax: 031-250-3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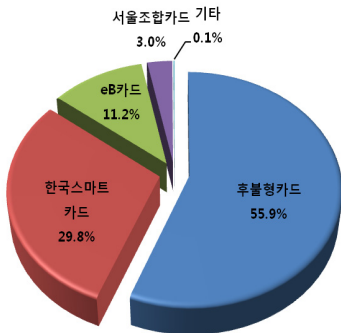


그림 1. 수도권 교통카드의 이용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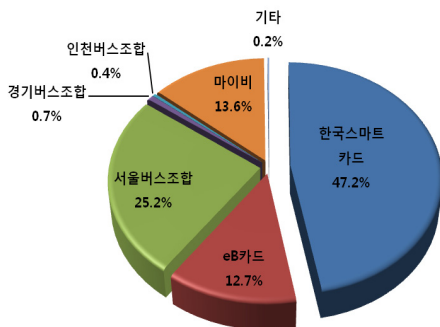


그림 2. 선불형 교통카드의 발급현황

하여 사용하는 카드이며, 후불형 교통카드는 교통카드기능을 갖고 있는 신용카드로 카드 이용금액 납부 시 정산하는 카드이다. 수도권의 선불형 교통카드 이용률은 44.1%로 후불형 카드 55.9%에 비해 이용률이 낮다.

선불형 교통카드의 경우 서울은 한국스마트카드(KSCC), 경기도와 인천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eB카드와의 계약을 통해 카드 단말기 설치 및 정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선불형 교통카드 이용률 44.1% 중 한국스마트카드 터미니 이용객이 29.8%, eB카드 캐시비 이용객이 11.2%로 파악되고 있다.¹⁾

2. 선불형 교통카드의 환급규정

선불형 교통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

표 1.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 (법률 제11461호, 시행 2012.9.2)

제2조(정의)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14호에 따라 선불전자 지급수단으로 규정되는데,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들을 의미하며, 전자화폐는 제외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며,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이 2개 업종 이상이어야 한다는

표 2.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 규정 (법률 제11461호, 시행 2012.9.2)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보유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 ②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과 관련된 약정을 약관에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일정비율은 100분의 20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

1)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2012.1), 내부자료.

표 3. 상법 [법률 제10366호, 시행 2012. 6.11]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한이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선불형 교통카드를 발행한 카드사는 이용자가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경우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 법령에는 선불형 교통카드의 잔액 환급에 대한 소멸시효는 규정된 바가 없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환급해야 한다.

상품권의 경우는 「상법」 제64조(상사시효)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서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1년, 3년, 1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선불형 교통카드를 발행한 카드사의 환급에 관한 약관에 따르면 환급은 편의점, 충전소, 전자금융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환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 소액 무기명 카드로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의 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관련 논의

2011년 6월 서울시에 대한 감사원의 종합감사

에서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에 대한 처분지시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감사원에서는 한국스마트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충전선수금 719억 원 및 이자에 대한 활용방안 모색을 요구하였다. 티머니카드는 서울특별시에서만 판매·충전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56개 시·도에서 판매·충전되고 있으므로 충전선수금 719억 원은 전국 56개 시·도에서 판매·충전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따라서 타 지자체 보유분에 대해서도 처리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최소 지급 준비금을 제외한 장기 미상환

표 5. 경기도의회의 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액의 환수법령 제정 촉구 결의안²⁾

- 교통카드사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1회 사용미달 금액, 분실카드, 장기 미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사내에 유보하거나 영업외 이익으로 산입, 처리하는데 이를 공공자원으로 환원하여, 공적인 목적에 사용되도록 제도화 필요
- 경기도는 선불교통카드의 장기 미사용액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환급 업무에 적극적인 행정지도·감독, 협의를 것을 결의
- 정부는 1년 이상 선불제 교통카드의 장기 미사용 잔액은 전액 공공의 특별계정으로 이관하고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공이 환원업무를 대행
- 발생하는 이자와 잔액을 공공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액의 환수법」 제정 요구
- 환원한 미사용액은 교통안전시설 보완이나 뺑소니 사고 중환자 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 제시

표 4. 티머니 카드의 충전선수금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	충전금액(A)	상환금액(B)	미상환금액(C=A-B)
2004	132,544	121,906	10,638
2005	459,038	446,397	12,641
2006	586,347	580,263	6,084
2007	716,488	706,588	9,900
2008	921,508	906,916	14,592
2009	1,218,230	1,200,184	18,046
계	4,034,155	3,962,254	71,901

자료: 감사원(2011.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 p.63.

2) 경기도의회(2011. 9), 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액의 환수법령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충전선수금은 사업자가 영업을 통해 거둔 수익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아닌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서울시에서 판매·충전된 교통카드의 미상환 충전잔액을 다른 56개 시·도의 충전선수금과 분리 계리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2012년에 한국스마트카드의 서울시 교통카드 정산업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사업 종료 전 사업시행자가 미상환 충전잔액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이 없도록 협약서 등에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경기도의회에서도 2011년 9월 21일 28명의 의원이 '경기도 선불교통카드 환급업무 강화 및 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액의 환수법령 제정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액 환급 관련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Ⅲ.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활용방안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을 이용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활용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현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여 상법과 마찬가지로 5년의 채권소멸 시효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령 개정이 늦어지거나 어려울 경우는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을 대중교통 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1. 대중교통발전기금의 설치

e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잔액은 2012년 5월 기준 471억 원이며, 이 중 3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금액은 80억 원,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금액은 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품권의 경우 상법에 따라 5년이 지나면 회사수입이 되나, 교통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기한 없이 관리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교통카드

사업자의 충전잔액에 대한 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선불교통카드사업자가 활용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회계처리만 복잡해지는 불편이 발생하므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전이라도 e카드가 보유 중인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잔액 중 5년 이상 미사용한 충전선수금 30억 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한가지 방법으로는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을 기부금 형태로 처리하여 대중교통 발전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의 검토가 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 영업의 이익이자 부채로 관리되는 선수금을 기부금 형태로 처리하게 되면 대중교통발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e카드간 MOU 체결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조례제정을 통한 기금활용 절차 마련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처리방안이 마련되면 의회에서 '대중교통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충전선수금 및 이자를 활용하기 위한 절차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경우 재해구호기금,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환경보전기금, 지역개발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복지기금, 농업발전기금 등이 운용되고 있는데 기금의 목적,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 심의위원회, 회계관리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에 대한 환불이 급격히 증가하여 최소 지급 준비금으로 충당이 불가능할 경우 경기도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장치 등 제도보완도 필요하다.

3. 대중교통발전기금을 활용한 사업 추진

대중교통발전기금은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쓰지 못하는 교통카드 잔액을 모

아서 만들어지는 돈인 만큼 주민이 원하는 대중교통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원하는 개선사업을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받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설문을 실시한 후, 버스정책위원회와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들이 바라는 최우선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양막 설치, 버스 표지판의 설치와 같이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을 중심으로 기금을 활용하고, 그 시설에는 대중교통발전기금으로 건설되었다는 표시를 반드시 해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돈으로 만들어진 시설임을 인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중교통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을 활용하여 대중교통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전철역 및 캐시비 충전소에서 충전선수금 환불서비스의 적극 추진, 시·도별 배분 비율 산정을 위한 기준 마련,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제안한다.

첫째로, 교통카드 충전잔액 환불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의 이용률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수도권 전철역 및 캐시비 충전소에서 충전잔액 환불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이후 찾아가지 않는 충전선수금을 대중교통발전기금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시·도별 배분 비율 산정을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는 5,800만 장, eB카드의 캐시비는 1,560만장, 롯데 마이비는 1,670만 장이 발급되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티머니 카드의 일부는 경기도민들이 충전하여 이용하고 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스마트카드사의 미사용 교

통카드 선수금 719억 원(2009년 기준) 중 타 시·도의 주민이 이용하면서 발생한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보유분 회수를 위해서는 시·도별 배분 비율 산정을 위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지역별 교통카드 충전금액, 선불형 교통카드별 이용률 등의 기준을 적용하면 합리적인 배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배분기준에 따라 타 지역 선불교통카드 사업자에게 대중교통발전기금의 기부 요청도 가능하다.

셋째로,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처리문제는 시·도 공통사항이므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토의 후, 정부 및 국회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에서는 2012년 11월 30일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로 '장기 미사용 선불교통카드 충전금 활용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게 되면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활용을 위한 법·제도가 마련된다. 이러한 법적 근거가 정비되면 주민이 원하는 대중교통 개선사업에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감사원 (2011.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2011. 8), 서울시 교통카드 업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교통연구원 (2012. 3), 전국 대중교통 정보 및 요금지불시스템 개편전략 세미나.